

의안번호	제 호	의결사항
의결연월일	2025. . . (제 회)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김문수 (고용노동부장관)
제출연월일	2025.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일학습병행에 대한 부정수급 발생시 지원에 대한 환수 대상, 추가징수 및 추가징수 감면 근거 규정 등을 명확하게 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일학습병행 부정수급액 추가징수 기준 근거 마련(안 제16조제3항)

일학습병행 지원을 받은 대상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경우 법 제34조 제4항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부정수급액 5배 이하의 금액에 관한 기준을 규정함

나. 추가징수 감면 규정 정비(안 제16조제4항)

추가징수 감면 사유에 자진신고한 경우 외에도 사소한 부주의·오류, 동기·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추가징수 감면 기준을 정비함

다. 별표 명칭 변경(안 제19조)

제16조제3항 별표 1 신설에 따라 제19조 별표 명칭을 별표 2로 변경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 기관 없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전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전

대통령령 제 호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6조제4항 중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하고, 같은 항에 각 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 중 “별표”를 “별표 2”로 하고, 별표 1을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

추가징수의 세부기준(제16조제3항 관련)

1. 영 제16조제2항에 따라 반환명령을 받은 자가 최근 위반행위 적발일 이전 5년 동안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았거나 받으려고 신청한 건수(이하 “부정지원·신청건수”라 한다)가 3회 미만인 경우: 거짓이나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금액”이라 한다)의 1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학습근로자 등과 학습기업 또는 공동훈련센터가 공모하거나 학습기업과 공동훈련센터가 공모(이하 “공모”라 한다)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의 3배
2. 부정지원·신청건수가 3회 또는 4회인 경우: 부정수금액의 2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의 4배
3. 부정지원·신청건수가 5회 이상인 경우: 부정수금액의 3배. 다만, 부정지원·신청건수에 공모한 건수를 포함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정수금액의 5배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② (생략)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반환을 명하는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금액(이하 “부정수금액”이라 한다)에 대하여 법 제14조 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이 취소된 학습기업 또는 법 제15조제3항 각 호(제4호는 제외한다)에 따라 인정이 취소된 학습기업의 사업주에게 부정수금액 이하의 금액을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은 자가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그 부정행위 사실을 자진 신고하면 제3항에 따른 추가징수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감면할 수 있다.	제16조(일학습병행에 대한 지원 및 환수 등) ①·② (현행과 같음) ③ 법 제34조제4항에 따른 추가징수의 세부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④ -----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 1. 법 제36조에 따른 지도·점검 전까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을 자진하여 신고한 경우

<신 설>

<신 설>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이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인한 것으로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신 설>	3.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실의 정도, 동기 및 결과 등을 고려하여 추가징수 금액을 감액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⑤ (생략)	⑤ (현행과 같음)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2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 ----- -- 별표 2--.
<신 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개정규정에 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제16조제3항·제4항 및 제19조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고용노동부 기업훈련지원과	
연 락 처	(044) 202 - 7295